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규제개선 건의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지원실은 규제 강화로 인한 민원발생 해결을 위해 지난 2013년 7월 25일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특정가스사용시설」 규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비롯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규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가스계량기와 타 시설물과의 이격 거리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편집자주]

1 특정가스사용시설 제외 건의

제도 현황

■ 제도개요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특정 가스사용시설】①항2호의 가. 내관 및 그 부속 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2013.7.25 개정 시행 중)

■ 현황 및 문제점

- 특정가스사용시설이란 월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세제곱미터)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또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을 포함함으로써 특정가스사용시설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어 민원이 되고 있으며 타법에서도 세대 내부를 검사하는 규정은 없음

-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 호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가스 누설 시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토록 법으로 규정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또한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

업자가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업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시공관리자가 시공관리를 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가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개선방안

■ **가스사용을 억제하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이며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상반되는 규정으로 종전과 같이 내관 및 부속시설을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제외**

2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에 시공자 개정 건의

제도 현황

■ 제도개요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법 제28조의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후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철거할 것. 다만, 용기등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소유인 경우에는 도시가스공급 예정일까지 용기등을 철거해 줄 것을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2. 제1호 단서에 따른 철거요청에 공급자가 불응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감독 하에 시공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 가. 액화석유가스의 용기는 압력조정기로부터 분리한 후 용기의 밸브 충전구에 막음조치를 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공급자에게 통보할 것

나. 액화석유가스의 배관 양단에 막음 조치를 하고 호스는 철거하여 설치하려는 도시가스배관과 구분할 것

■ 현황 및 문제점

- 액화석유가스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공급계약은 당사자 간의 상법에 의한 상거래로서 제3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확인 및 철거토록 전가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 액화석유가스공급자의 개인사유 재산을 일반도시가스 감독 하에 시공자가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 침해로 민사소송의 여지가 있음
- 액화석유가스공급자에게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토록 하였으나 가스공급자의 별치조항이 없어 확인해 줄 의무가 없음. 또한 제3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안전공급계약의 해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액화석유가스공급자가 알려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용기등의 소유주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민원이 될 수밖에 없음
- 또한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도시가스사

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공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시공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액화석유가스공급자나 사용자 간의 계약에 시공자가 관여하는 것은 월권행위임

- 따라서 당사자인 가스사용자가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액화석유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가 협의 하에 액화석유가스공급자 또는 시공자가 철거토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없게 하고 안전관리 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개선방안

■ 액화석유가스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공급계약은 당사자 간의 상거래로서 제3자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확인토록 전가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개정하여야 하며 당사자인 가스사용자가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액화석유가스공급자와 가스사용자가 협의 하에 액화석유가스공급자 또는 시공자가 철거토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민원의 소지를 없게 하고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3 타 시설물과의 이격 거리 완화 건의

제도 현황

■ 제도개요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 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와의 거리는 3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 및 공동건물의 시설물 다변화로 인한 타 시설물 이격 거리 유지가

불가능하여 가스배관 시공이 불가능하고 가스 누출 시 점멸기 및 콘센트 등의 스파크에 의한 점화가 사실상 불가능함

-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상가, 스텝코너 등은 공간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이격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안전관리상 최소한의 이격 거리만 유지토록 개선해야 함
- 일본의 경우 전기콘센트와 가스콘센트를 위아래로 붙여서 시공 사용하고 있고 안전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보편화 되어 사용 중에 있음

개선방안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와의 거리는 30c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와의 거리는 15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는 15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으로 개정 ◉